

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

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법 시행령 개정

▶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(2015. 01. 29)

▣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, 이하 농식품부)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,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▣ (허가제 도입배경) '10~'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,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“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”(’11.3월)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,

○ 이에 따라 축산법 개정(’12.2월)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였고, 1년 후인 ’13.2.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였다.

▣ (추진경과) ’13.2.23일 종축업·부화업·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*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

○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(’14.2월)하여 ’14.2.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모

를 전업규모**이상의 농가까지 확대하였다.

* 대규모 사육시설면적 : 소 1,200㎡, 돼지 2,000㎡, 닭 2,500㎡, 오리 2,500㎡ 초과

~ 대규모 사육마리수 : 소 100두, 돼지 2,000두, 닭 50,000두, 오리 10,000두 이상

** 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: 소 600㎡, 돼지 1,000㎡, 닭 1,400㎡, 오리 1,300㎡ 초과

~ 전업규모 사육마리수 : 소 50두, 돼지 1,000두, 닭 30,000두, 오리 5,000두 이상

▣ (추진상황) ’1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『방역체계 개선대책』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, 축산업 허가제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·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

○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㎡ 미만에서 10㎡ 미만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,

*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(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)

○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·사람·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,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**축산업 허가 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적정사육기준을 강화**해 나갈 예정이다.

- 종계·종오리업, 부화업, 닭(산란계, 육계)·오리 사육업의 허가시설 및 장비기준에 **농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*** 등 시설을 설치토록하고, 축산업 허가기준 중 **소독시설과 방역시설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**하며,

* 전실 :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·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함

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시설면적을 선진국(EU 등)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**산란계의 시설형태에 따른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을 강화***하고,

- 현재 소·돼지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**구제역의 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**하여 개선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.

* 케이지(cage) (현행) 0.05㎡/마리 → (개선) 0.055㎡/마리, 평사 (현행) 0.11㎡/마리 → (개선) 9마리/㎡

▣ **(향후계획) '15.2.23일부터** 축산업 허가대상을 **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***의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며,

○ **'16.2월까지**는 허가대상을 **소규모 농가(사육 시설면적 50㎡ 초과)까지 지속적으로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준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: 소 300㎡, 돼지 500㎡,

닭 950㎡, 오리 800㎡ 초과

~ 준전업규모 마리수 : 소 30두, 돼지 500두, 닭 20,000두, 오리 3,000두 이상

○ **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**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,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,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**소독시설**과 사람·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**담장 등 방역시설**을 갖추어야 하며,

- 다만,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('15.2.23일)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,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·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, 준전업 규모 이상으로 **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**

○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,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.(축산법 제53조 ~ 제56조)

- 또한, **중요한 방역시설·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,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·교육·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 시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**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, **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** 등에는 **영업을 정지**하거나 허가를 **취소**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(축산법 제 25조)

○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

